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말로 만료되면서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은 폐지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1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감면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함

3. 주요내용

-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함 : 2011. 12. 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17조, 29조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20조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44조
 -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42조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55조(일부 이관)
 - 제10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14조

-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16조
-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31조
- 제1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67조
- 제15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 부칙 제4조
-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84조
-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83조
- 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지특법 제79조

4. 참고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5조
- 경상북도 세정과-14559('10.9.29)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은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1년간 감면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4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1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별다른 저촉사항 없음